

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0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5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 사업에 있어 교육사업만을 하도록 제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교 전통문화 계승·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.
-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사업의 내용을 더욱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(안 제5조 제3호).
- 나. 협의체 구성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수정함(안 제7조).
- 다. 협의체 운영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수정함(안 제9조).

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교육”을 “관련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회의)”를“(협의체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일시 · 장소 ·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.
-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

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규정을 따른다.

제10조 중 “등에게 예산”을 “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유교 전통문화 관련”을 “문화재의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”로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사업) 시장은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성균관·향교·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·예절 교육 사업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5조(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관련 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협의체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9조(회의) ① <u>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<u>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	<p>제9조(협의체의 운영) ① <u>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수당 등)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유교 전통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.

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규정을 따른다.

제10조(수당 등) -----
----- 등에게
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-----
-----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
----- 문화
재의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활용 등
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,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·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·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고,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문화체

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
2.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3.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업) 시장은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성균관·향교·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·발전 사업
2. 성균관·향교·서원의 문화체험·관광,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
3. 성균관·향교·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·예절 관련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4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3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·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서울특별시의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
3.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·단체의 대표자
4.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
5.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
6.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대표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

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협의체의 운영)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, 일시 · 장소 ·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.

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,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규정을 따른다.

제10조(수당 등)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

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재의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